

상담소등 종사자의 수(제7조 관련)

구분	지원시설				자활지원 센터	상담소
	8명 미만	8명 이상 15명 미만	15명 이상 20명 미만	20명 이상		
상담소등의 장	1	1	1	1	1	1
사무국장	—	—	1	1	—	—
상담원	1	3	4	5	2	3
직업훈련교사	—	—	—	—	2	—
사무원	—	1	1	1	1	1
조리원/세탁원	—	1	1	1	—	—
관리인	—	—	—	1	—	—
총계	2	6	8	10	6	5

※비고

1. 지원시설에서 직접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기술교육을 담당하는 직업훈련 교사는 상담원으로 볼 수 있다.
2. 자활지원센터에서 외부 강사로 하여금 자립자활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직업훈련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, 이 경우 그에 상응하는 상담원을 두어야 한다.
3.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상담소등(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을 제외한 다)의 장은 그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.
4.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퇴직 등으로 일시적인 결원상태가 된 경우 별표 2 제2호의 개별기준 중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둔 경우에는 1년간 이를 각각 상담원 및 직업훈련교사로 볼 수 있다.